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마목부터 너목까지를 각각 사목부터 러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마목 및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비위의 정도 및 과실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마. 대학수학능력시험 및 모의시험의 출제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대학수학능력시험 및 모의 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비위	과면	해임	해임-강등-정직	감봉-견책
바. 학생 선발 결과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 대학, 대학원, 고등학교 및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입학편입학과 관련된 비위	과면	해임	해임-가등-정직	감봉-견책

별표 비고 제1호의2 중 “제1호사목”을 “제1호자목”으로 하고, 같은 비고 제3호
중 “제1호카목”을 “제1호파목”으로 하며, 같은 비고 제4호 중 “제1호타목”을
“제1호하목”으로 하고, 같은 비고 제5호 중 “제1호파목”을 “제1호거목”으로
하며, 같은 비고 제8호 중 “제1호거목”을 “제1호더목”으로 하고, 제1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호마목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이란 「고등교육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시험을
말하여, “모의시험”이란 「고등교육법」 제34조제8항에 따른 시험을 말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제1호마목 및 제1호바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징계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